

군포케어119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 당사자) 센터와 이용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의사의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와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체결) 서비스제공을 의뢰받거나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뢰인이나 신청인과 상담을 하여 서비스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구두·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제88조에 정한 구비서류를 통해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 ② 제공하려는 서비스제공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 ③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다만,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계약체결(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 후 지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 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 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의 절차를 따른다.

(구비서류)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 ② <표준 장기요양 이용(제공)계획서> 사본 1부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⑤ <장기요양 이용신청서> 1부

(계약기간)

- ① 수급자가 이용신청서에 명시한 이용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개시일로부터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욕구사정을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③ 계약기간의 종료가 도래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
- ④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장기요양등급이 갱신 또는 변경된 경우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계약체결)의 절차를 따른다.

(계약해지조건) 계약의 당사자 각각의 계약 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센터가 계약에 정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센터(또는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정신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고 인정되어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센터의 이용계약 해지 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된 이용 안내를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의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센터가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7.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에 의한 통보로 신청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계약종결)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결된다.

- ①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 ② 이용자가 이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보증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다만,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받을 권리
2. 급여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자신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서비스이용에 있어 성별, 나이, 학력, 종교, 출신지,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5.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6. 급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8. 이용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
9. 급여 실시 내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
10.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하는 의무
2. 이용자와 함께 이용료를 부담하는 의무
3. 센터의 직원에 대한 존중의 의무
4. 센터의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
5.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 되는 경우에 대리인 선정을 선정하고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방문요양 사업 서비스 내용】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다.

1. 방문요양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 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 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